

光州廣域市西區地方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年 5月  
企劃總務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提案者

나. 回附日字 : 1996年 4月 29日

다. 上程日字 : 第55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2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5月 8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地方稅課長 鄭 玉 鉉)

가. 提案 事由

○ 구세입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등을 보완 및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 포상금을 지급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 지급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
-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이하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급 한도액을 규정
- 포상금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이중부과 등 착오에 의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

###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지방을 삭제 간결하게 하였으며 자치단체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 한도와 체납액 일소방안을 강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한 개정 조례안으로 세수 증대 방안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임.

###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 5. 討論 要旨 : 생략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조명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각 호에'를 '각호의 1에'로 하며, '대하여'를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로 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동조 제1호중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종사한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버려진 세원과'를 '버려지거나'로 하며, '포착하여 부과케한'을 '찾아내어 부과케한'으로 하고 '및'을 '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제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사업소장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명 '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다음 구분에'를 '각호의 기준에'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동조1항제3호중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를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동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를 '제1항제3호에'로 '지급한다'를 '지급하며'로 하고, 동조동항에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를 삽입한다.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정실적대장을'을 '구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정대장을'으로 한다.

제5조조명 '포상금 지급신청'을 '지급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명 '포상금 지급'을 '지급'으로 하고,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를 '①제5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명중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대장'을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세무과장'을 '지방세과장'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의1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조례명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p> <p>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p>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신설)</p> <p>(신설)</p> <p>(신설)</p>	<p>조례명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p> <p>제2조 (지급대상) ①---각호의 1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종사한 공무원-----</p> <p>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케한 공무원 또는-----</p> <p>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p> <p>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사업소장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p> <p>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 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100의 10</p> <p>3.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 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p> <p>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p> <p>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p>	<p>제3조 (지급기준) ①-----                      각호의 기준에-----</p> <p>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p> <p>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p> <p>3. -----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p> <p>4. (삭제)</p> <p>② 제1항제3호에-----                      -----                      -----지급하며,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 (대장비치)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제3조의1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li> <li>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li> </ol> <p>②제2조제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대장비치) 구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과정대장을-----</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6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5조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지급)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p>
(신설)	
(신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u></p>

(별지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상(포상금지급대상)

(단위 : 원)

징수원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확인 (계장)	포상금 포청(지급)액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본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제2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상(포상금지급대상)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일자	징수인 확인 (계장)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인등록 번호			포상금액	지급일

※ 구분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조항 등을 기록

(별지제3호 서식)

###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수 신 : 광주광역시장

참 조 : 세정과장

발 신 : OO구청장

구 분	건수	징 수 액			포상금액
		세 액	가산금	계	
합 계					
1.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가. 1년차분 체납액 징수 나. 2년차이상 체납액 징수					
2. 숨은 세원 발굴 가. 미 등 기 나. 미등기 1년 경과 다. 무단점용 라. 기 타					
3. 제안 또는 제도개선					